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31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부산신항로지텍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5.한 2012년 재산세 3,659,480원, 지역자원시설세 34,600원, 지방교육세 723,620원, 2013년 재산세 3,601,020원, 지역자원시설세 34,370원, 지방교육세 712,190원의, 2013. 10. 16.한 취득세 390,955,480원, 지방교육세 20,729,490원, 농어촌특별세 27,92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물류창고, 수출입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8. 부산 강서구 성북동 1531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항만시설 등 16,995.18㎡를 신축(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하여 2012. 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 1. 창고업, 국제복합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비아이디씨 주식회사(이하 '비아이디씨'라 한다)와 사이에 비아이디씨가 가져오는 자재를 입고,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운용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운용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도시개발(이하 '신도시개발'이라 한다)에게 화물입출고, 트럭장비제공, 자재검수 등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작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대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5. 2012년 재산세 3,659,480원, 지역자원시설세 34,600원, 지방교육세 723,620원, 2013년 재산세 3,601,020원, 지역자원시설세 34,370원, 지방교육세 712,190원을, 2013. 10. 16. 취득세 390,955,480원, 지방교육세 20,729,490원, 농어촌특별세 27,925,3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바.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하차 업무 등을 담당하며 창고업을 영위한 것이지 이 사건 창고를 비아이디씨에게 임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비아이디씨가 이 사건 창고를 전용하고 원고에 대하여 물류운영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아이디씨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였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창고를 비아이디씨에게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책임 아래 비아이디씨로부터 받은 화물을 보관, 관리하고 비용을 정산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① 원고는 임직원이 17명 정도이고, 원고로부터 화물입출고 업무를 위탁받은 신도시개발은 임직원이 13명 정도로, 만약 원고가 단순 임대업자라면 위와 같은 많은 임직원들이 근무할 필요가 없다.

② 비아이디씨로부터 지급받는 비용은 사용면적에 따른 고정비와 처리물량에 따른 변동비로 나누어지는데, 원고는 2012. 1.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비아이디씨로부터 물류센터 사용료 명목의 고정비로 3,137,971,821원, 입출고작업료, 입고검사비용 등 변동비 명목으로 1,178,252,028원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물류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무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류센터 내 안전조치를 하였다(계약서 제5조, 제6조).

④ 원고는 화물의 입, 출고 업무와 보세화물을 비아이디씨가 지정한 지역으로 운송할 때 보세운송 신고 및 면허를 취득하는 업무, 입고된 자재의 입고검사 및 보존지원, 상자 개방, 재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계약서 제1조 제8항, 제9항).

⑤ 원고는 입고된 자재의 인수, 실물 확인 의무가 있었고, 입출고된 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였으며 재고 확인, 손망실 검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중장비 운행, 구축물 관리, 관리 시스템 구축의무가 있었으며, 도난 예방조치 의무가 있어 망실, 분실 시에 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화물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 준수 등 의무가 있었다(계약서 제5조).

⑥ 원고는 2012. 1. 20., 2013. 1. 20., 2014. 1. 20. 각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고, 2013. 5. 25. 물류창고 현장에서 발생한 화물파손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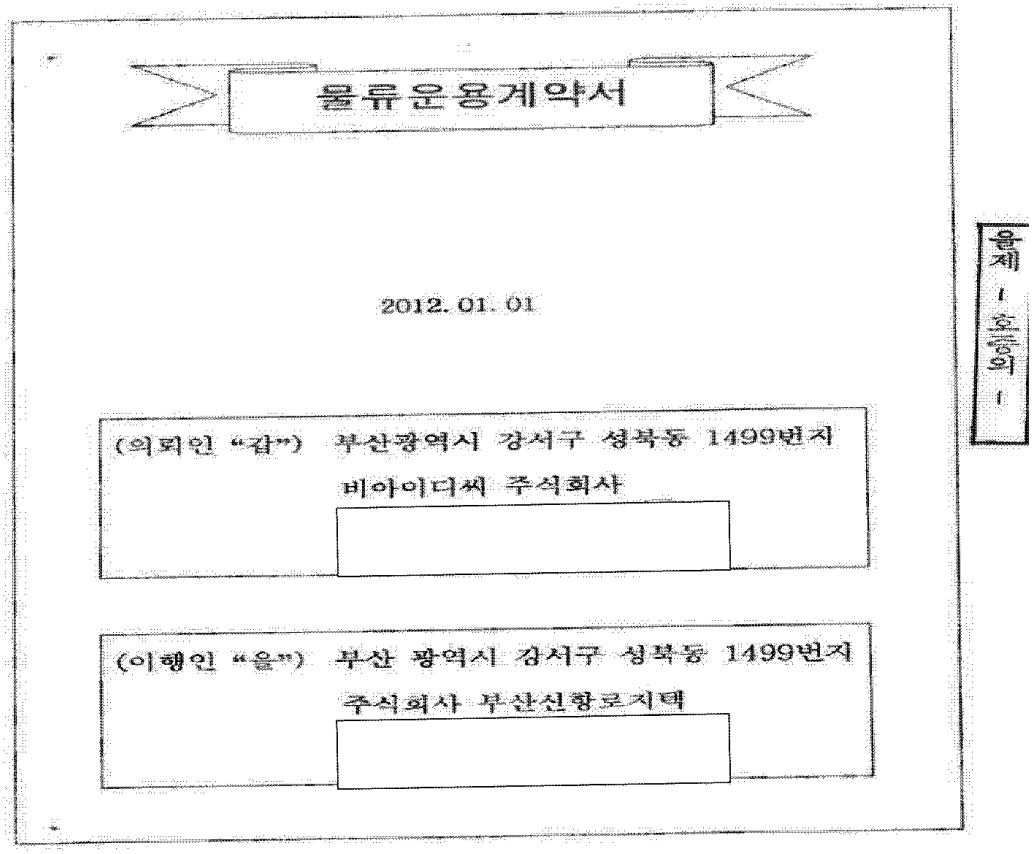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신수빈

판사 신동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별지 1



물류운용계약서

2012. 01. 01

(의뢰인 "갑")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9번지
비아이디씨 주식회사

(이행인 "을") 부산 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9번지
주식회사 부산신항로지택

율제 1 호의 1

1/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물류 운용 계약서>

< 물류 운용 목적물 >

소 재 지	부산 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9번지(부산신항로지택)
보 관 료	물류 센터, CANOPY AREA, 항온/항습실 및 부대 시설 등. - 보관 장소에 따른 보관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치율을 면적으로 환산한 단가 적용(항온/항습실 전기료 포함)
작 업 료	- 장비/인력을 이용한 입,출고역 경우 물량(CBM :용적 톤) 대비 단가 계약(단, 중장비/기타 작업비는 실비 및 별도 단가 정산) - 입고검사 지원(BOX OPEN, 배열, 복원 작업), PRESERVATION 지원, 재포장의 경우 물량(CBM :용적 톤) 대비 별도 단가 계약

위 표시 목적물을 이용하여 물류를 운용함에 있어 의뢰인 비아이디씨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행인 주식회사부산신항로지택(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물류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대상업무)

상기 소재 물류센터의 관리 및 관리되고 있는 자재에 대한 하기의 운용업무

1) 입하 자재의 하역 및 상차 업무
2) 입하 자재의 BOX 외관 검사 업무(DAMAGE여부 확인)
3) 입고 및 저장 업무
4) 입고 자재 품질보존 업무
5) 입,출고 재고관리 업무(전산 업무 포함)
6) 물류 관리업무(보전, 수선, 경비, 개선)
7) 기타 물류운용 업무에서 수행되는 자재관리 업무
8) 보세화물을 부산신항로지택 물류센타에서 DSME(옥포) 또는 DSME가 지정한 기타 지역으로 운송 시 필요한 보세운송 신고 및 면허취득 업무
9) 부산신항로지택 물류센타에 입고 된 자재의 입고검사 및 PRESERVATION 지원과 BOX OPEN, 재 포장 업무

제 2 조 (계약기간)

1) 물류 운용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5년(2012.01.01 ~ 2016.12.31)으로 한다.
2) 물류 운용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종료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미 통보 시 계약은 동일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조건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운용비용)

1) "을" 은 이행보증금 50억원을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갑" 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운용비용 단가는 MARKET RATE를 고려하여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가 가능하다.
3)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 및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금액 150억원을 "을" 의 명의로 가입하고, 피보험자는 "갑" 으로 하며, 보험료는 보험 가입한 월의 운용비용 정산 시 "갑" 은 "을" 에게 지급한다.
4) "갑" 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RACK, PRESERVATION용 설비등)의 비용은 설치된 월의 운용비용 정산 시 "갑" 은 "을" 에게 지급하고, "갑" 의 비용으로 설치 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갑" 에게 있다.
5) "갑" 은 이행보증금 50억원에 대한 이자(년5%)를 매월 운영비용에서 공제한 후 "을" 에게 지급한다.
6) 물류센터보관료 및 작업료(물량 대비 단가계약)등 물류센터 운용비용의 세부내역은 별첨 "1"과 같다.

제 4 조 (대금 지불조건)

1) "을" 은 물류센터 보관료 및 작업료등 물류센터 운용비용 청구서를 매월 말일 "갑" 에게 제출하고 "갑" 은 제출 받은 청구서를 확인한 후 "갑" 의 지불조건에 따라 운용비용을 지불한다.
2) 위 제4조1항은 물량 산출에 따른 고정비이며, 처리물량에 따른 변동비는 별첨"1"에 준 한다
3) 이행보증금 50억원은 2017년도 재계약시 별도 협의한다.

제 5 조 (이행 및 책임)

1) "을" 은 물류 운용에 대한 모든 업무를 "갑" 의 지시에 따른다.
2) "갑" 은 "을" 의 물류센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을" 과 "부산항만공사" 와 체결한 "신항 북 "컨" 부두 배후 물류단지 내 입주업체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7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제10조(입주자시설의 양도 및 임대), 제18조(실시협약의 이행확인), 제 24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각항에 따라 "을" 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특히 제 26조(사후관리)1항 "입주기업 실적 평가지침" 에 의거 하여 운영 개시 후 매 3년 마다 사업계획서 상의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을 시 평가 항목인 화물창출, 고용 창출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을" 은 위 2항에 의거 하여 "갑" 의 지원 하에 채용하는 고용인에 대해 임금 및 복리 후생등은 "갑"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갑" 의 회사에서 "을" 의 회사로 소속 변경 된 직원에 대해 어떠한

3 / 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경우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을" 은 물류센터로 입하.입고 및 저장중인 모든 자재에 대해 인수 및 실물 확인의 책임이 있으며 만약 문제(누락,손상)가 있을 경우 즉시 "갑" 에게 통보 및 협의하여 그 결과에 적합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

5) "을" 은 물류센터로 입하되는 모든 자재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BIDC 유관 조직으로부터 입수 및 관리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 주간 해상 선적, 입항, 운송 STATUS 정보
- 외 자재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 보세운송면장

6) "을" 은 물류센터로 입하.입고되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전산 시스템 포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유지할 책임이 있다.

7) "을" 은 물류센터에 입.출고 되는 모든 자재의 정보를 실물과 일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갑" 과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다.(정보처리 지연 금지)

8) "을" 은 물류센터로 입하.입고되는 모든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관리하고 " 갑" 의 요청 시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을" 은 물류센터에 입고 된 자재를 "갑" 의 공급(운송)요청 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재를 공급(운송)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준비 미비에 의한 "갑" 의 공정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10) "을"은 물류센터에 입하.입고 되는 모든 자재의 저장.운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갑" 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갑" 의 요청에 따른 옥내.외 및 장비 별 구분 저장
- 입고검사 지원작업(BOX OPEN, 배열, 복원작업)
- PRESERVATION 지원 업무(전원장치 설비 및 기타 지원)
- 입하 일자 표기 및 확참 부착
- 공급(운송)자재 식별 TAG 부착(품명,공급요청일,공급 요청자,도착지 등)
- 옥포YARD 입고자재에 대한 분산 운송(오전/오후, 시간대 별 분산)
- 기타 개선 요청사항

11) "을" 은 물류센터로 입하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도착 즉시 손.망실 (외 포장, 실물 손상, MISSING)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손.망실이 발견 시 관련자료(협정서,사진,하자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갑" 에게 통보 할 책임이 있다.

12) "을" 은 외 포장 손상 발견 시 "갑" 의 내품 손상여부 확인 요구에 따라 세관에 신고 후 BOX를 해체하여 내품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갑" 에게 통보 할 책임이 있다.

13) "을" 은 물류센터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결품,손상여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업무 미 수행 또는 수행을 하였으나 결품,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 이 인수 시 발견 될 경우 그 책임은 "을" 에게 있다.

4 / 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14) " 을" 은 물류센터 내에 저장되는 모든 자재의 장리정돈 및 명확한 호선, 품명, 저장위치(LOCATION)를 표기하고 관리하여 정보와 실물이 일치토록 관리 유지 할 책임이 있다.
15) "갑" 의 공급요청에 따른 "을" 의 운송조건은 다음과 같다.
- DSME공급(운송) : YARD지정 물류센터 도착도 조건
- 사외 협력사(사급운송) : 해당 협력사 도착도 조건
16) "을" 은 "갑" 의 지시에 따라 공급(운송)된 자재에 대해 명확한 인수.인계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한 문제는 "을" 에게 책임이 있다.(송장 및 자재 인수.인계서 작성 및 인수자 서명 확인 필수)
17) "갑" 은 "을" 에게 BOX(PACKING)단위로 공급(운송)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별도 협의하여 수행한다.
18) "을" 은 물류센터에 CONTAINER로 입하되는 모든 자재를 하역을 하여 저장하고 EMPTY COTAINER는 반납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하역이 불가한 경우 "갑" 과 별도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9) 물류센터에 CONTAINER로 입하된 자재의 하역이 "을" 의 사정으로 지연되어 DETENTION CHARGE가 발생한 경우 "을" 이 부담 하여야 한다.
20) "을" 은 물류센터에 입.출고 및 "갑" 에게 공급(운송)되는 물동량을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관리하고 실적 현황을 "갑" 에게 제시(정기, 부정기) 할 책임이 있다.
21) "을" 은 "갑" 의 정기 및 부정기 재고조사 요구에 따른 수행책임이 있으며, 재고조사 결과 장부재고 대비 현물재고 불일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22) "을" 은 물류센터에서 입고.출고 되는 모든 자재에 대한 반.출입관리를 수행하고 기록 유지를 할 책임이 있다.
23) "을" 은 공급(운송)준비(BOX 단위 선별)완료 된 자재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명기하고 지정 된 보급대기 장소를 선정하여 대기 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24) "을" 은 최적의 물류(입하/입고, 저장/운송)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활동을 하여야 한다.
25) "을" 은 중장비 운행 및 구축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6) 물류운용의 효율 저하 시 "을" 은 "갑" 의 개선요청에 따라야 한다.
27) "을" 은 물류운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갑" 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8) "을" 은 물류운용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9) 물류운용 물량에 대한 권한은 "갑" 에게 있다.
30) "을" 은 물류센터 내 저장되는 모든 물품의 도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경비원 배치, 도난예방 시설물 설치 및 보안시스템설치 등)
31) "갑" 이 물류센터 사용 중 안전작업 및 물류운용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물류운용 목적물에 대한 개선 요청 시 "을" 의 비용으로 즉시 조치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여야 한다.

32) "을" 은 물류센터의 민원 발생에 대한 조치 책임이 있다.

33) "을" 은 물류센터의 화재,도난,파손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4) "을" 은 보세화물 관리에 있어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관 화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한다.

35) "을" 은 보세화물을 육,해상 운송 시 관세법에 의거 보세 운송허가 등록 업체 및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6) "을" 은 DSME 재고 자산에 대하여 산업보안 관리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7) "을"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갑" 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갑" 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제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이후에도 존속한다. 단,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1) 물류운용 근무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 에게 있다.

2) "을" 은 물류센터 내 안전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운영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각종 안전표지판 및 안전 처,공구 설치, 안전점검 등)

제 7 조 (부속물의 설치)

1) "을" 은 물류센터에 자재저장 및 공급(운송)과 관련한 부속물을 설치 및 관리 할 책임이 있다.

2) 물류 운용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용품 일체는 "을" 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3) 입/갑판 및 자재관리에 필요한 각종 표식은 "을" 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제 8 조 (인력 및 중장비 운용)

1) 물류센터 내에서 자재 취급에 필요한 인력 및 중장비는 "갑" 의 지시에 따라 "을" 이 확보하여 운용 및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최초 물류 운용 시 "갑" 은 "을" 이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단독 운용 및 관리 수행이 가능 할 때까지 인력을 지원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 한다.

제 9 조 (운용 경비)

1)물류센터 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 자재 저장, 운송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
- 통신비, 사무용 집기 및 소모품 구입 수선 비용

제 10 조 (계약 해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1) "갑" 은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을" 의 도산, 노사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위한 "갑" 의 요구에 "을" 이 불응하거나 지체 할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종료가 필요한 경우

제 11 조 (배상 책임)
1)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 과 "을" 은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보상 하여야 한다.
2) "을" 의 관리 부재로 인한 자재의 분실, 파손, 침수, 부식 및 화재로 인한 자재의 소실 시 "을" 은 "갑" 에게 변상 하여야 한다.
3) "을" 의 자재 저장 및 공급 수행 성과(적기 공급 율/월)미흡으로 "갑" 의 공정에 심각한 문제 발생시 "을" 은 "갑" 의 피해를 변상 할 책임이 있으며 변상금액은 "갑" 과 "을" 이 별도 산출 및 합의하여 물류비용에서 차감 적용한다.
4) "을" 은 자재 취급 시 발생 할 수 있는 파손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손실 금액의 전부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5) 모든 자재의 취급 부주의 및 운송 시 고박, 우천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상 및 품질문제 발생에 대한 조치 비용에 대한 변상 책임이 "을" 에게 있다.
6) "을" 이 수행해야 하는 물류센터 내 반입 자재 검품,손상여부 검사 업무 미수행 또는 검사업무 수행을 하였으나 검품,손상을 발견 못하고 "갑" 이 인수 시 발견되어 발생되는 조치비용 대한 변상 책임이 "을" 에게 있다.

제 12 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간에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서류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01월 01일

"갑")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499번지 비아이디씨 주식회사

"을")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499번지 주식회사 부산신항로지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별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7011 부동산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20 창고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합물,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관세부과지역에 설치되는 무역상품 보관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끝.